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 박홍배·김성환·김한규

한준호 • 정진욱 • 민병덕

김현정 · 김준형 · 민형배

문대림 • 이수진 • 이연희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 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 • 운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 • 운 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 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 분) ① (생 략) 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 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 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 ---- 「지방행정제재·부과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과징금) ① (생 략) 제48조의5(과징금) ① (현행과 같 음)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 (2) -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 ④ (생 략)

제49조(대집행) ① ~ ④ (생 략) 저

<신 설>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③・④ (현행과 같음)
세49조(대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u>⑥</u> <u>제5항</u>